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40
----------	-------

발의연월일 : 2025. 8. 27.

발 의 자 : 박지혜 · 박정현 · 이소영
장종태 · 염태영 · 황명선
정일영 · 박용갑 · 김 윤
김정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2035 NDC와 함께 장기감축경로 수립 작업이 진행중임. 이와 같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는 국제협약상 요구되는 NDC 제출과 감축경로 수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이러한 목표 수립 시기와 배출권 할당계획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이와 같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기간 중이라도 국가 감축목표가 변경된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몇 년째 탄소배출권 가격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

고 있으며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면 기업들에게 적절한 감축 유인을 제공하기 어려운 바, 배출권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시장안정화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최저가격제를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출허용총량 산정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그대로 배출허용총량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의 달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기간 중에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이를 반영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매년 정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 이하가 된 경우에는 배출권의 축소 조치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3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획기간 중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이를 반영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매년 정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 이하가 된 경우
- 2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배출권의 축소 조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 -----.
1. <u>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u>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 <u>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u> ----- ----- ----- ---
2. ~ 11. (생략)	2. ~ 11.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계획기간 중에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할당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 ----- ----- ----- ----- -----
<u><단서 신설></u>	- <u>다만, 계획기간 중에 국가온</u>

④ · ⑤ (생략)

제23조(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설>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 2. (생략)

<신설>

실가스감축목표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이를 반영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가격이 매년 정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 이하가 된 경우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배출권의 축소 조치

3. (생략)	3. (현행과 같음)
---------	-------------